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6609
----------	-------

제안연월일 : 2026. 2.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연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452호)	곽규택의원 등 15인	2024.6.13.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4.8.23.)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 사제1소위(2025.2.24.) 상정/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 사제1소위(2025.7.25.) 상정/심사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 사제1소위(2025.8.25.) 상정/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 사제1소위(2025.11.20.) 상정/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 사제1소위(2026.1.21.) 상정/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 사제1소위(2026.2.3.) 상정/심사
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023호)	전재수의원 등 11인	2024.6.2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2024.9.23.)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 사제1소위(2025.2.24.) 상정/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 사제1소위(2025.7.25.) 상정/심사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 사제1소위(2025.8.25.) 상정/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 사제1소위(2025.11.20.) 상정/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 사제1소위(2026.1.21.) 상정/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 사제1소위(2026.2.3.) 상정/심사

연 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9263호)	윤상현의원 등 10인	2025.3.21.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회부(2025.7.24.)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7.25.) 상정/심사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8.25.) 상정/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1.20.) 상정/심사 ·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1.21.) 상정/심사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2.3.) 상정/심사
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0124호)	정일영의원 등 12인	2025.4.25.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회부(2025.7.24.)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7.25.) 상정/심사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8.25.) 상정/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1.20.) 상정/심사 ·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1.21.) 상정/심사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2.3.) 상정/심사
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0181호)	박찬대의원 등 11인	2025.4.28.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회부(2025.7.24.)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7.25.) 상정/심사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8.25.) 상정/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1.20.) 상정/심사 ·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1.21.) 상정/심사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2.3.) 상정/심사
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0427호)	배준영의원 등 13인	2025.5.8.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회부(2025.7.24.)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7.25.) 상정/심사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8.25.) 상정/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1.20.) 상정/심사

연 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1.21.) 상정/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2.3.) 상정/심사
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121호)	권칠승의원 등 10인	2024.6.4.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8.23.)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9.24.) 상정/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상정/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1.21.) 상정/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2.3.) 상정/심사
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937호)	이성윤의원 등 11인	2024.6.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9.23.) 상정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1.21.) 상정/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2.3.) 상정/심사
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280호)	안호영의원 등 10인	2025.1.7.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5.9.4.) 상정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1.21.) 상정/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2.3.) 상정/심사
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4239호)	민홍철의원 등 11인	2024.9.24.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1.10.) 상정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1.21.) 상정/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2.3.) 상정/심사

나.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2.3.)는 이상 10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10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6.2.4.)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건조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무역 규모 세계 7위, 국제항공화물 처리량 세계 2위의 해운·조선·무역 강국이고,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및 고등법원 등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으나, 해사전담재판부가 지닌 구조적·기능적 한계로 인해 해사분쟁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억원~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무역량과 함께 국제상사분쟁 해결수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법원이 없어 기업이 불편을 겪거나 중재를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을 관할로 하는 전문법원을 인천 및 부산에 각각 설치하여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률 시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여 국내 법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가정법원이 설치된 타 지역에 비해 인구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고, 화성시, 김해시의 경우 인근에 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사법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

이 있음. 이에 전주가정법원과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을 설치하고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설치하며, 화성시법원을 각각 설치하여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권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과 부산에 설치함(안 제2조제1항, 제4조, 별표 1, 별표 11 신설).

나.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함(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다.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각각 설치함(안 별표 1,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라. 화성시법원을 설치함(안 별표 2, 별표 7).

법률 제 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회생법원과”를 “회생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과”로 한다.

제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1

별표 1 중 특허법원란 다음에 해사국제상사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전주지방법원란 다음에 전주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란 다음에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란 다음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란 다음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광역시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부산광역시

전주가정법원	전주시
--------	-----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군산시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정읍시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	남원시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별표 1 중 창원가정법원 거창지원란 다음에 창원지방법원 김해
 지원란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김해시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김해시

별표 2 중 수원지방법원 오산시·군법원란 다음에 화성시·군법원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화 성	화 성 시
--	-----	-------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별표 2 중 창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창 원		창원남부	창원시 진해구
	마 산	함 안	가 야 읍
	마 산	의 령	의 령 읍
	진 주	하 동	하 동 읍
	진 주	사 천	사 천 시
	진 주	남 해	남 해 읍
	진 주	산 청	산 청 읍

	통 영	거 제	신 현 읍
	통 영	고 성	고 성 읍
	밀 양	창 녕	창 녕 읍
	거 창	합 천	합 천 읍
	거 창	함 양	함 양 읍

별표 3 중 광주고등법원의 전주지방법원 본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주	전주시 · 김제시 · 완주군 · 임실군 · 진안군 · 무주군
----	-----------------------------------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별표 3 중 부산고등법원의 창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창 원		창원시 의창구 · 성산구 · 진해구
	마 산	창원시 마산합포구 · 마산회원구, 함안군 · 의령군
	통 영	통영시 · 거제시 · 고성군
	밀 양	밀양시 · 창녕군
	거 창	거창군 · 함양군 · 합천군
	진 주	진주시 · 사천시 · 남해군 · 하동군 · 산청군
	김 해	김해시

별표 5 중 광주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광주	광주		광주광역시, 나주시 · 화순군 · 장성군 · 담양군 · 곡성군 · 영광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목포	목포시 · 무안군 · 신안군 · 함평군 · 영암군
		장흥	장흥군 · 강진군
		순천	순천시 · 여주시 · 광양시 · 구례군 · 고흥군 · 보성군

		해남	해남군 · 완도군 · 진도군
	전주		전주시 · 김제시 · 완주군 · 임실군 · 진안군 · 무주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	군산시 · 익산시
		정읍	정읍시 · 부안군 · 고창군
		남원	남원시 · 장수군 · 순창군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별표 5의 부산고등법원란 중 창원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창 원		창원시 의창구 · 성산구 · 진해구.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양산시를 제외한 경상남도
	마 산	창원시 마산합포구 · 마산회원구, 함안군 · 의령군
	통 영	통영시 · 거제시 · 고성군
	밀 양	밀양시 · 창녕군
	거 창	거창군 · 함양군 · 합천군
	진 주	진주시 · 사천시 · 남해군 · 하동군 · 산청군
	김 해	김해시

별표 7 중 수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 원		용 인	경 기 도	용인시
		오 산	경 기 도	오산시
		화 성	경 기 도	화성시
	성 남	광 주	경 기 도	하남시 · 광주시
	여 주	양 평	경 기 도	양평군
	여 주	이 천	경 기 도	이천시
	평 택	안 성	경 기 도	안성시

	안 산	광 명	경 기 도	광명시
--	-----	-----	-------	-----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별표 7 중 창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창 원		창원남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마 산	함 안	경상남도	함안군
	마 산	의 령	경상남도	의령군
	진 주	하 동	경상남도	하동군
	진 주	사 천	경상남도	사천시
	진 주	남 해	경상남도	남해군
	진 주	산 청	경상남도	산청군
	통 영	거 제	경상남도	거제시
	통 영	고 성	경상남도	고성군
	밀 양	창 녕	경상남도	창녕군
	거 창	합 천	경상남도	합천군
	거 창	함 양	경상남도	함양군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창원지방법원 김해
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3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같은 부칙 제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이 법 시행으로 2032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32년 2월 29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본원
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32년 2월

29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32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으로 2032년 3월 1일부터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32년 2월 29일 현재 창원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관한 사항: 2028년 3월 1일
2. 전주가정법원,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 설치에 관한 사항: 2028년 3월 1일
3. 화성시법원 설치에 관한 사항: 2032년 3월 1일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가정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전주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및 남원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및 남원지원에 각각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으로 2032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화성시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32년 2월 29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별표 11]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역

고등법원	해사국제 상사법원	관할구역
인천	인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부산	부산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u>회생법원과</u>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제2조(설치) ① ----- ----- ----- <u>회생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과</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제4조(관할구역) ----- ----- -----. ----- -----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u>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1</u>